

# 국내생산 세제지원 신설… 첨단산업·지역경제 등 뒷받침

세수 효과 2031년까지 3조4000억  
취약 품목 직접 생산·판매 때 공제  
지역별 계수 적용해 지방 우대 강화  
인구감소지역 벤처 출자 공제를 상향  
1인가구 근로장려금 180만원 지급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과세 외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에 초점을 뒀다.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특례 조처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6대 부문을 지원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부품이다.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 시(내년 2월) 반영한다.

다만 요건이 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동시에 판매도 해야 한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지방우대까지 지원한다. 기준공제액에 생산지역별 계



부산항에 수출용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수를 곱한다. 계수는 수도권 1.0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가 1.1, 기타 비수도권이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이 1.5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수소 분야에 대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액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을 위해 법인세를 지원하고, 연안해운 우수 회주를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현행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또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상향(5%→7%)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한다.

정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추진한다.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자와배당 전액 이비과세 대상이다. 대상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이다.

민생·지방에 대한 지원책도 두텁게 마련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1인가구는 현행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홀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각각 285만 원, 330만 원에서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지원도 강화한다.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지역별 계수에 더해, 지방 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우대한다. 청년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현행 5년간 90% 감면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90%, 기타 비수도권은 7년 9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 9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세수효과를 3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7년 7812억 원, 2028년 1조8893억 원, 2029년 4882억 원, 2030년 642억 원, 2031년 2201억 원 등이다.

특히 종부세가 3년간 2조181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8227억 원, 후년 1조966억 원, 내후년 2622억 원이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종부세 '몇 채'보다 '얼마짜리'…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비과세

2028년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과세기준·기본공제 14억 상향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 9억 축소  
다주택자, 거주 비중만큼 공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줄여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2주택과 3주택 이상으로 나뉜 세율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현행 제도는 같은 가액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 수가 많으면 별도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1·2주택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가액 기준으로 완전히 바꿀 방침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도 인상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과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

으로 높아진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중산층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격대별로는 시가 20억~30억원인 거주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

반면 공제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대신 4억원을 우선 공제받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가액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받는다. 거주 주택의 비중이 작을수록 공제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제 개편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과 시행 시기 등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재편되면서 고가·비거주 주택의 매물이 늘어날지, 핵심지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합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 수요 등이 맞물리며 내년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은 매물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가 2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하면 양도세 공제도 적용되는 만큼 핵심지역의 '떨뽕한 한 채' 선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와 단기 매매 수요는 위축돼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 '기술·노하우 기업' 중심 재편

전문기술 보유 727개 업종 선별  
경영 1년당 공제액 20억원 적용  
제3자 승계도 매도·매수자 감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도 추진한다. '기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동시에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특히 '기업'의 정의를 기존과 달리하기로 했다. 기업을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기술 및 노하우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 취지에 맞는 공제 대상 업종 727개를 선정한다. 예로,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등에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주요 제외 업종도 제시했다. 마트와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다. 최대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매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를 감면한다.

과세 재설계도 추진한다.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한다.

포상금 제도도 개편한다. 탈세와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신고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또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남 함안의 한 대장간.

/뉴시스